

광주 도심 분양 불법현수막에 '몸살'

아파트 분양·조합원 모집 다수... 광고효과 노려 도시미관·안전 저해... 각종 편법에 단속 역부족



광주 도심 곳곳이 아파트 분양과 주택 조합원 모집 등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은 광주 북구 중흥삼거리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광주 도심 곳곳이 아파트 분양과 주택 조합원 모집 등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9일 광주 북구 중흥삼거리. 구청이 설치한 현수막 게시대를 옆에 두고 건설사와 분양업체의 현수막 13개가 가로수 사이에 삐뚤히 내걸려 있었다.

이 현수막들은 "최저가, 입차수의 평생보장, 2배 오르는 기회" 등 현혹적인 문구로 가득했다.

같은 날 광주 서방사거리 전신주 사이에도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어지럽게 내걸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일부 현수막은 횡단보도의 적신호를 가리고 있었고, 전봇대·가로수에 묶은 쇼핑백에는 분양 홍보 전단이 가득했다.

14일 광주 일선 5개구 등에 따르면

아파트 미분양이 늘었던 지난 2015년부터 광주 도시의 불법 현수막이 급증했다.

동구의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액은 2014년 1674만원에서 2015년 2억7712만원, 2016년 2억1779만원, 2017년 1802건 4억4312만원을 기록했다. 서구도 2014년 2억2213만원, 2015년 9억6390만원, 2016년 15억6185만원, 2017년 10억732만원을 부과했다.

남구의 부과액도 2014년 9878만원, 2015년 2억508만원, 2016년 14억4420만원, 2017년 12억7112만원이다.

북구와 광산구도 2014년 1억~3억대의 과태료 부과액이 2015년 들어 11억~14억으로 폭등했으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0억~70억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현수막 수거 건수도 급증했다. 서구(2016년 18만5188개→2017년 28만9258개), 북구(17만1326개→24만7065개), 광산구(12만개→15만개) 등을 기록했다.

수거된 현수막의 80~90% 가량은 아파트 분양이나 주택조합원 모집 광고물도, 2015년부터 지역 아파트 공급과 미분양이 늘면서 이 같은 실태를 보이고 있다고 자치구는 분석했다.

불법 현수막에 따른 부작용도 잇따른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재개발 최대 수혜 지역, 마지막 800만원대, 1억원에 오피스텔 2채 구입 가능' 등 현혹적인 문구나 허위 광고로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도 잦다.

또 주말마다 내걸고 평일에는 떼는

게릴라성 현수막, 전봇대·가로수에 묶은 쇼핑백에 홍보 전단을 넣어두는 경우, 전광판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한 불법 홍보,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현수막을 들고 서있는 경우 등 분양 수익을 올리기 위한 각종 편법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광주지역 일선 구청들이 불법 광고물을 상습적으로 게시된 건설사·분양업체 등지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현수막 도배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과태료 부담보다 현수막 광고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모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현수막 부착은 단기간에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감수하고 현수막을 내거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아무리 많은 현수막을 붙여도 한 번에 최대 500만 원까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점, 현수막 부착 대형 업체의 난립, 단속 인력 부족 등도 '부착·수거·재부착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배경이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시공예정사 이름으로 현수막을 걸고, 건설사는 용역업체에 현수막 부착을 맡기는 실정"이라며 "현수막을 부착한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고, 적발시에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도 많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배상 영업을 하는 업체들도 부지기수"라고 밝혔다.

이어 "수익만 쫓는 아파트 시공·분양대행 업체, 주택조합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며 "단속 인력 충원 및 실효성 있는 단속 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대 가야금병창 교수 공채 불공정 논란 1위 면접심사 대상자 재심사 결정 당사자 법원에 무효처분 소송 제기

전남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에 응모했던 지원자가 최종 면접을 앞두고 대학 측이 심사 불공정을 이유로 재심사에 들어가자 반발하고 있다.

12일 전남대에 따르면 대학 측은 예술대학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교수 공모 광고를 내고 1차 서류심사와 전공심사, 2차 연주심사와 공개강의,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8호 가야금병창 보유자인 A씨는 1차와 2차 심사를 통과한 뒤 단독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대학 측은 면접 하루 전날인 지난 3일 구체적인 설명 없이 A씨에게 면접심사가 연기됐다고 통보했다.

이후 대학 측 교수 공채 공정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된 내용을 검토한 뒤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관리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이나 A씨를 상대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심사가 불

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이의 신청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심사 평가표와 서술 내용을 보고 불공정하다고 결정했다"며 "A씨는 재심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A씨는 대학 측이 이의 신청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면접심사를 중단하고 재심사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최고 점수를 받아 단독 면접대상자로 선정됐는데도 대학 측이 특정한 이의 신청만을 받아들인 채 구체적인 내용도 밝히지 않고 무효화했다"며 "특정인을 합격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법원에 전임교원 공개채용 가야금 병창 분야 면접 중단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성은 기자

"증상 그대로" 종합병원 방화미수 50대 집유 치료·간호사 불친절 등 불만에 쓰레기통 불내

치료 등에 불만을 품고 종합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은 현존조건불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을 선고받은 A(57)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 대상인 병원 측에서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뭄위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10시 46분께 전남의 한 종합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수기 1회용 종이컵과 종이컵 분리수거기를 한 곳에 모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가하면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 뚜껑과 소화기 받침대에도 불

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방화는 같은 날 오후 10시 52분께 해당 병원에서 공사 중이던 한 근로자에게 목격돼 미수에 그쳤다.

앞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A 씨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간호사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와 함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특히 종합병원은 거동이 어려운 다수의 환자가 이용하고 있어 방화로 인한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단 "치료 뒤 3차례나 다시 병원을 찾아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쳐 피해가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은 사실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성은 기자

광주은행, 세무서 상대 법인세 취소소송 승소

법원 "어음 지급업무만 위임, 원천징수의무 부담은 부당"

광주은행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정훈)는 광주은행이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지방법국세청은 2014년 7월 22일부터 2014년 10월 8일까지 광주은행에 대한 법인세 합법조사서를 실

시했다. 이어 광주은행이 2011년 12월 8일부터 2013년 4월 19일까지 3219건의 기업어음에 대한 8조 9959억 원의 어음금을 투자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어음금에 포함된 할인액 2021억 9400여만 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관할 세무서인 광주세무서장에게 법인세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광주세무서는 2014년 11월 3일 광주은행에 2011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16억 3235만 원 및 할인액과 관련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억 원을 포함한 2011년 귀속법인세 4억 646만 원을 부과처분했다.

또 2014년 12월 5일 2012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8억 646만 원 및 2013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3

억 3370만 원의 부과처분도 내렸다.

광주은행은 광주지방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광주은행은 해당 기업어음의 지급업무만을 위임받았을 뿐 원천징수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광주은행에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광주세무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광주은행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다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광고문의 : 062-363-8800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호남매일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광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광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광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 honamnews@hanmail.net